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

-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규영 위원입니다.
  
-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00호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우선,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적절한 수요와  
공급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전문성 및 서비스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등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과 함께  
돌봄 종사자에 대한 열화와 책임은 강화되고 있으나,  
노인 돌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이들 돌봄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및 불안정한 고용형태 등 열악한 근로환경은 현재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한 돌봄의 질 저하문제가 우려되지만, 관계 법령에 구체적인 개선책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 이런 점에서 노인 돌봄이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돌보는 일이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이와 함께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이고 행정적인 지원들이 필요한 때라 할 것입니다.
- 이에 동 조례안은 요양보호사 및 간호사 등 노인돌봄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를 향상 시킬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를 위해 동 조례안에서는 구체적으로,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4조, 제5조)하고,
-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규정(안 제6조)하였으며,
-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및 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7조, 8조)하고,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

문화(안 제9조, 10조, 11조)하였습니다.

□ 참고로, 동 조례안은 지난 6월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인돌봄종사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과  
「서울특별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돌봄종사자에 대한 법적 요건을 보다 명확히하고 유사·중복되는 사항은 동 조례안으로 통합·조정하여 발의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돌봄종사자들의 처우 및 권익향상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노인 돌봄서비스 질이 향상되어지고,  
이를 수행하는 돌봄종사자에게는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